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태준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690
----------	-------

발의연월일 : 2026. 2. 10.

발 의 자 : 안태준 · 문진석 · 정준호

조정식 · 김영진 · 이연희

전용기 · 윤종균 · 이정문

김정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를 두어 무주택세대주 등이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일부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1천만원을 그 한도로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전세 사기의 위험과 전체 대출 보증 축소 등으로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월세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기존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5년 동안 이월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여 월세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95조의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5조의2제1항 본문 중 “월세액”을 “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공제대상금액으로 한다”를 “공제대상금액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로 한다.

이 경우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전단에 따른 율을 적용한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월세액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이 항, 제87조제2항 및 「소득세법」 제52조제4항·제5항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8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해당 과시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100분의 15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5천5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이	제95조의2(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 ① ----- ----- ----- ----- ----- ----- ----- ----- ----- ----- ----- ----- ----- ----- ----- <u>---월세액(1천만원을 한도로 한다)</u> ----- ----- -----

[illegible]

②

②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을 제1항에 따른 <u>공제 대상금액</u>으로 한다. 1. 2. (생략) ③ ④ (생략)	----- -----<u>공제대상금액</u>으로 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월세액에 대해서는 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1. 2. (현행과 같음) ③ ④ (현행과 같음)
---	---